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위생과-23391
등록일자	2015.10.12.
결재일자	2015.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이순영	조영출	신길호	10/15 서명옥		
협조자	★인사팀장 정찬식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이·미용업) 계획



- **평가기간** : 2015. 10. 12 ~ 2015.12.31
- **평가대상** : 2,069개소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휴·폐업 및 공사 중 업소 제외)
- **평가인력**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공무원 3명)
-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평가지침)에 의거 업소방문 현장조사 및 평가
-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업종별 27~30개 항목)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 ①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②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
 - ③ 기타(홍보 등) : 위생교육(년1회) 이수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
- **평가결과 공표** : 온라인 + 오프라인
- **특이사항**
 - ① 옥외가격표시(최종지불요금표)부착 중점 평가 및 현장 계도
 - ② 미용업(피부) 업소 무면허 의료행위(고주파기, 초음파기, 미용문신, 미세침 등) 평가 항목 추가 및 위생관리(헤면, 수건 등 소독 등) 중점 평가 및 현장 계도
 - ③ 위생교육 수료(년1회)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 병행(평가표에 안내 항목 추가)

2015. 10. .

강 남 구
(위 생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248(2015.4.13) • 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서울시 생활보건과-9299(2015.4.21)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우편요금, 간담회비 • 서비스평가 추진 유공자 표창 : 총무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 포상금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중위생업소 이용 구민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0)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0)</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25개 전부 실시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사항임 																											

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이·미용업) 계획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248(2015.4.13)
-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서울시 생활보건과-9299(2015.4.21)

II 현 황

■ 공중위생업소 현황

(2015. 10. 7 기준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업
3,084	142	118	388	107	1,962	366	1

■ 연도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평가업종	숙박·목욕·세탁·위생관리용역	이용·미용업 ※ 피부미용포함	숙박·목욕·세탁업	이용·미용업 ※ 화장분장 제외

연도별 평가실적

(단위 : 개소, %)

연도	대상 업소수 (개소)	평가 업소수 (개소)	평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	목욕	이용	미용	피부 미용	세탁	위생관 리용역
총계(평균)	3,409	3,196	93.8	92.5	91.2	99.1	96.3	89.3	95.1	85.6
2014	646	607	94.0	91.2	94.2				94.9	
	녹색	262	43.2	68.6	60.2				29.5	
	황색	179	29.5	25.8	34.5				29.2	
	백색	166	27.3	5.6	5.3				41.3	
2013	1,756	1,672	95.2			99.1	96.3	89.3		
	녹색	867	51.8			72.3	47.8	62.2		
	황색	483	28.9			16.1	30.9	24.7		
	백색	322	19.3			11.6	21.3	13.1		
2012	1,007	917	91.1	93.7	88.1				95.2	85.6
	녹색	335	36.5	64.9	37.3				9.3	62.3
	황색	338	36.9	26.1	57.6				46.3	19.0
	백색	244	26.6	8.9	5.1				44.3	18.7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2015.10.12 ~ 2015.12.31

■ 평가대상 : 2,069개소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휴·폐업 및 공사 중 업소 제외)

■ 평가인력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공무원 3명)

■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평가지침)에 의거 업소방문 현장조사 및 평가

■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업종별 27~30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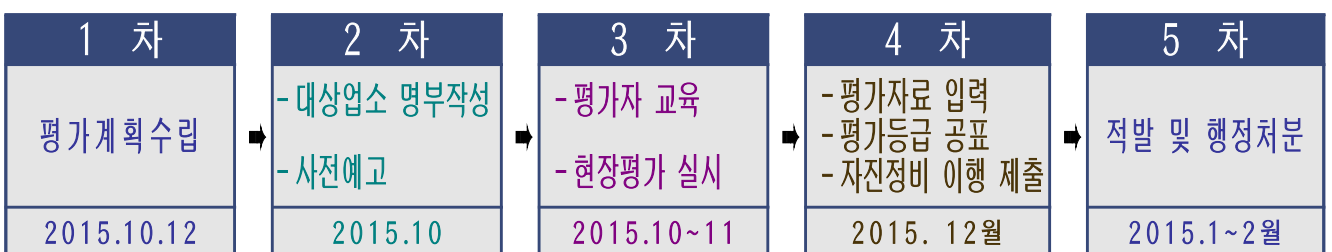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①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②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

■ 평가결과 공표 : 온라인 + 오프라인

■ 업무처리 흐름도



IV 추진 계획

1 무단폐업 등 시설물 조사 정비

- 조사기간 : 2015. 6. 1 ~ 10. 31
- 조사대상 : 공중위생업 6개업종(숙박·목욕·세탁·이·미용·위생관리용역업) 중 폐업신고 미이행 의심 업소 등(장기간 위생교육미필 및 우편반송 업소 등)
- 조사인력 : 11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8, 공무원3)
- 조사방법 :
 - 1차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폐업의심 업소 현장 방문조사(15.6.1~8.30)
 - 2차 공무원 시설물 멸실(무단폐업) 업소 현장조사서에 의거 방문 조사(15.10.13~10.31)
- 조치사항
 - 시설물 멸실(무단폐업)업소 자진폐업 안내
 - 1차 폐업 확인 업소 공무원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2015.10.31

2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사전예고제 시행

- 대상업소 : 2,069개소(이용 107, 미용업 1,962)
 - ※ 2015. 10. 7일 기준 등록업소(서비스평가 업소 명부 확정)
- 추진방법
 -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사전 안내공문 우편 발송 : 2015.10.12
 - 옥외가격표시(최종지불요금표) 부착,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년1회) 수수료 및 폐업 신고 이행 의무 안내 병행 ⇒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피부미용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위생관리 철저 안내(한국소비자원 배포 보도)
 - ⇒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할 수 있는 시술 금지(고주파기,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 사용)
 - ⇒ 미용문신, 미세심 시술(MTS), 카이로프렉틱 등 시술
 - ⇒ 해면, 수건 등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자외선살균기 비치 등)
 - 공중위생 서비스평가계획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2015.10.12

2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자 교육

- 교육일시 : 2015. 10. 13(화) 10:00 ~ 11:00
- 장 소 : 강남보건소 2층 다목적실
- 교육대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 교육내용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요령 및 민원응대요령
 - 청렴교육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
- 교 관 : 위생과장, 공중위생팀장

4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평가기간 : 2015. 10. 12 ~ 11. 30
- 평가대상 : 2,069개 업소(이용107, 미용업 1,962)

합 계	이용업	미 용 업								
		소 계	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	일반+ 손톱·발톱	피부+ 손톱·발톱	일반+피부+ 손발톱
2,069	107	1,962	637	436	44	802	9	23	10	1

- ※ - 2015.10.7일 까지 신고된 업소(평가 대상업소 변경 가능)
- 미용업 세분화 이전의 미용업은 미용업(종합)에 포함
 - 미용업(화장·분장)은 신설 업종임을 감안하여 2015년도 평가에서 제외(현재 신고업소 없음)
 - 미용업 중 일반+피부, 일반+손톱·발톱, 피부+손톱·발톱으로 영업신고 받은업소는 1개 신고증으로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태별로 따로 평가 실시

- 평가인력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 공무원 3명)

■ 평가방법

- 업소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부여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개조(2인/1조) 구성·운영
- 「붙임 1~5」 업종별 평가항목표 활용하여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 ①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②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

- 업종별 평가 항목 ----- 【별첨4】 평가항목표 및 평가지침

구 분	이용업	미용(일반)	미용(피부)
평가항목수	28개	27개	29개
일반현황	업소현황 등(8개)	업소현황 등(29개)	업소현황 등(8개)
준수사항	이용기구 소독장비, 커튼, 별실 설치,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여부 등 (10개)	미용기구 소독장비, 작업장소 1/3이상 투명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등(9개)	베드, 온장고, 미용기구 소독장비, 작업장소 1/3이상 투명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등(11개)
권장사항	수건, 커트, 이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8개)	수건, 커트, 미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8개)	피부미용기구 소독장비, 온장고, 화장품 등 청결상태 등(8개)
기타(홍보 등) :점수미반영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2개)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2개)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2개)

구 분	미용(손톱·발톱)	미용(종합)
평가항목수	28개	30개
일반현황	업소현황 등(10개)	업소현황(영업형태) 등(9개)
준수사항	미용기구 소독장비, 작업장소 1/3이상 투명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등(9개)	베드, 온장고, 미용기구 소독장비, 작업장소 1/3이상 투명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등(11개)
권장사항	네일미용기구 소독장비, 수건, 네일미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7개)	미용기구 소독장비, 베드, 온장고, 미용기구 등 청결상태 등(8개)
기타(홍보 등) :점수미반영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2개)	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2개)

■ 평가점수 산정 및 등급 결정 ----- 【별첨2】 점수 환산 방법 참조

구 분	등 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 우 수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 수	황색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	백색등급	80점 미만

- ※ - 준수사항(60점)+권장사항(40점)의 득점수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 총점 90점 이상 준수사항 미충족 : 황색등급 부여
- 평가점수 계산(방식) : 붙임 6 참조

5

평가결과 공표

■ 평가결과 공표 : 온라인 + 오프라인

- 평가결과를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타지자체에 안내 및 홍보
- 평가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사항 알림 등

6

법정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 사후 관리

■ 추진기간 : 2016. 1. 20 ~ 4. 30

■ 대 상 : 공중위생업 서비스평가 시 법적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

■ 추진인력 : 3명(공중위생팀)

■ 조치사항

- 법정 준수사항 미충족 내용 통보 : 2016.1.20한
- 개선이행 결과 제출(증빙자료) : 2016. 2.28한
- 개선이행 결과 미제출 업소 ⇒ 공무원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 적발 ⇒ 행정처분

7

홍보 등 기타 추진 사항

■ 추진기간 : 2015. 10. 13 ~ 11. 30

■ 대 상 : 2015공중위생업 서비스평가 대상업소

■ 추진인력 : 25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 공무원3)

■ 추진내용

- 옥외가격표시제 부착 실태 중점 조사 및 홍보(계도)
- 미용업(피부) 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위생관리 실태 중점 평가 및 계도
⇒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할 수 있는 시술 여부(고주파기,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 사용)
⇒ 미용문신, 미세침 시술(MTS), 카이로프렉틱 등 시술 여부
⇒ 해면, 수건 등 소독 등 위생관리 실태(자외선살균기 비치 등)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의무(년1회) 및 폐업신고 이행 안내 홍보
⇒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안내

V**소요예산**

----- 금18,969,200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 금17,600,000원

- 산출근거 : 40,000원 × 22명 × 20일 = 17,600,000원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2015년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의 활동출근부에 의거 지급 (2015.3.6 위생과-5764호)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자 교육 및 간담회비 : 금210,000원

- 산출근거 : 7,000원 × 30명 × 1식 = 210,000원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사전 안내공문 전자우편발송 : 금1,159,200원

- 산출근거 : 420원 × 2,760개소 × 1회 = 1,159,200원
- 예산과목 :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테스크포스팀 운영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지급방법 : 우편물 발송시 부서카드(BC카드)사용 후 결제통장에 무통장 입금

VI**행정사항****■ 2014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 업소 명부 작성****■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사전예고**

- 평가실시 협조 안내문 우편발송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평가실시 계획 공지
- 위생민원실 평가실시 안내문 비치 및 인허가 담당자 신고증 교부 시 안내 등

■ 평가자(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실시**■ 위생서비스 평가결과(등급) 통지 및 우수업소 공표(온·오프라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서울시 보고**

- '15년도 위생서비스평가 실시결과 2016.1.10.까지 (붙임 9서식)
- 우수업소 공표결과 보고 : 2016. 02. 05(금)까지 (붙임 10서식)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서울행정시스템(위생)전산입력

■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 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준수

Ⅶ 유공자 표창 수여

■ 서비스평가 추진 유공자 표창 ----- 총무과

- 훈 격 : 구청장 표창
- 유공분야 : 사업유공(2015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기여)
- 추천대상 : 공무원 2명
- 소요예산 : 60만원
- 예산과목 : 총무과, 원활한구정운영,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 붙임 1~5.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평가 지침 1부.
6~7. 평가점수 계산표(엑셀)작성방법, 위생등급표(서식)
8. 평가점수 계산표(서식)
9. 평가결과 보고 서식(강남구 → 서울시 보고) 1부.
10. 최우수업소(녹생등급)공표현황(서식) 1부.
11. 평가자 교육사항
12.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및 서울시 평가계획 각 1부.
13. 2015공중위생 서비스평가대상명부(이·미용업) 1부.
14.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안내문 업종별 각 1부. 끝.

관련 법 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